

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10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김근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기부금품 채원모집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 요 내 용

- “각급 기관단체와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·물품 또는 재산”을
“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정 기타금품 또는
기타재산”으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관계법령을 살펴보면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
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3억원 미만일 경우 시·도

의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그 이상일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